##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오지훈 의원

발의일: 2021. 8.

## 1. 제안이유

○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"도시림"에서 "도시숲"으로 명칭 변경을 제명 및 전체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(제명, 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1조, 제17조)
- 나. 도시숲 등의 조성 ·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가지치기 방법 및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, 제14조)
- 라. 가로수의 조성 ·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,

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·휴식공간을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·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,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취지의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21월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,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